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6
------	------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6일, 신원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1)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신원철 의원)

- 본 개정안은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농수산물식품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비상임이사에게 농수산물식품공사와 관련 영리목적 업무의 종사를 제한하여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비상임이사 현황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그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정수의 절반 미만이 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정관에서 임원에 대하여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6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감사 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으로 구성됨(참고 자료 1)

정관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6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업무 담당 국장 1명, 투자기관총괄관

리업무 담당 주무국장 1명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

2. 위촉직 :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분야 전문가,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의 겸직 및 영리목적 업무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서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항의 단서에서 상근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를 배제하고 있어 문언의 해석상 비상임이사의 경우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 동일한 취지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는 내규인 임원인사규정을 통하여 임원의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인 임원에서 비상임이사는 제외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비상임이사가 월정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을 받으면서 지방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임이사의 겸업금지를 통하여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만 법령에서 비상임이사의 영리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종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비상임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함.

법률자문의견	
A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 역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침해라 보기 어려움
B	비상임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여 영업기회의 유용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함.
C	각 지방공기업의 성격, 업무형태, 임원의 직무 등에 따라 그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견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한편,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면 상임이사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는 방안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원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66
----------	------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 박운기, 조상호, 문형주,
김동율, 김용석(도봉), 장인홍,
박진형, 최웅식, 김창원,
서윤기, 김인제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하고 있는 바, 비상임이사가 농수산물공사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사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u><신 설></u></p>	<p>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사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② <u>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u></p>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신원철